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3. 13 선고 2019가단51797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3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84,269,673원 및 그 중 116,362,426원에 대하여 2019. 6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강영훈

별지